

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 출 일 자 2004. 6. .
제 출 자 구 미 시 장

1. 개정사유

- 문화예술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자 위촉 확대
-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활성화 도모
- 효율적인 시립예술단 운영
- 직제 조정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 변경

2. 주요골자

-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 (제5조제2항) : 11명⇒15명(증 4명)
- 부서 명칭 정정 (제5조제3항) : 문화체육담당관⇒문화공보담당관

3. 참고사항 : 별첨

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중 “10인”을 “14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중 “문화체육담당관”을 “문화공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(생략)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<u>10인</u> 이내로 구성한다.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장이 되며, 위원은 <u>문화체육담당관</u> , 각단의 지휘자. 안무자. 연출자와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④~⑪ (생략)	제5조(운영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- - - - - <u>14인</u> - - - - -. ③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문화공보담당관</u> , - ④~⑪ (현행과 같음)

□ 타 시·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원현황

구분	구미	김천	포항	마산	의정부	김해	익산
위원수	11	15	11	약간명	15	20	15

□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수당 증감현황

구 분	현 행	개 정	증 감	비 고
소요 예산	2,480천 원	3,720천 원	증 1,240천 원	
산출 근거	○ 운영수당 : 2,240천 원 · 70,000원×8명×4회 ○ 초과수당 : 240천 원 · 30,000원×8명×1회	○ 운영수당 : 3,360천 원 · 70,000원×12명×4회 ○ 초과수당 : 360천 원 · 30,000원×12명×1회		